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48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이언주·민병덕·정성호

이재강 • 이개호 • 이상식

문정복 • 권칠승 • 강득구

부승찬 · 손명수 의원

(119]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4개 분야에서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산 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 보호조치, 특화 단지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만으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아울러, 현행법상 반도체 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는 규제적 성격이 강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및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이 국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반도체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의 실행계획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조).

- 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 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 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함(안 제9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 산업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 여야 함(안 제12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이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반도체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반도체산업 공급망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차. 정부는 반도체 기술혁신 및 지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 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함(안 제19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및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다.
 -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계·제조·공급 등 사업화하는 산 업
 - 나. 가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소재· 부품·장비·패키징 등 공급망 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 비스를 사업화하는 산업
 -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 2. "반도체클러스터"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투자, 반도체의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3. "반도체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이란 반도체 중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반도체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반도체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제5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방향
 - 2.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5.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 7.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 발 투자의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
- 8.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9. 반도체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 10. 반도체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1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규제 일원화 및 인 • 허가 의제 확대 등 제도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및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 지정 ·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특례에 관한 사항
- 8.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 가 의제 사항
- 9.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 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사업자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① 정부는 반도 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있다. 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중복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2.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①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 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의 운영 등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13조(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반도체 제조시설 신설, 확대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 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융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이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중고품을 포함한다)에 투자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이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5조(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반도체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또는 반도체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 2.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 3.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 4. 중・장기 수급 여건 전망
- 5.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 6.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공급망안정품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반 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 에게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 위기 징후를 포착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 제17조(반도체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반도체산업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2.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 ② 공급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반도체산업 공급망 정보 수집 분석
 - 2. 반도체산업 공급망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 3. 반도체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책·제도·연구개발 동향 조사 등 에 대한 정책지원
 - 4. 반도체 기업의 공급망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 등에 관한 자문

- 5. 그 밖에 반도체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급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공급망센터의 운영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반도체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반도체 관련 정보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종합대책의 수립·시행과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반도체 기술혁신 및 지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②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7.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8. 차입금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수입금
- ③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 1.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 2. 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 3.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 4.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 5.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 6.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설치·운영
- 7. 반도체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 · 연구 사업
- 8.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9.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10.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0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 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이전에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에 대하여 도 적용한다.